##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69 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조계원·문금주·양부남

김문수 · 서삼석 · 민병덕

이기헌 • 박수현 • 윤준병

권향엽 • 박지원 • 양문석

박민규 • 이재관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항시설, 산업단지,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등 화재 발생시 사회·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,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음.

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0조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	제40조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		
의 안전관리) ① 소방청장은	의 안전관리) ①		
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			
사회 ·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			
다음 각 호의 시설(이하 "소방			
안전 특별관리시설물"이라 한			
다)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			
리를 하여야 한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9의2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의		
	공연장 중 수용인원 1천명 이		
	<u>상인 공연장</u>		
10. ~ 14. (생 략)	10. ~ 14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